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877호 2012. 4. 3(화)

◀ 조 려 ▶

○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84호)	2
○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85호)	6
○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제1086호)	16
○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제1087호)	20
○ 포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1088호)	31
○ 포항시 장애인상 조례(제1089호)	41
○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1090호)	44
○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제1091호)	51

◀ 규 칙 ▶

○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563호)	54
--	----

◀ 훈 령 ▶

○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제247호)	66
--------------------------------------	----

◀ 입법예고 ▶

○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2-583호)	85
---	----

◀ 고 시 ▶

○ 포항 장성동주택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제2012-22호)	90
--	----

◀ 공 고 ▶

○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제2012-20호)	92
----------------------------------	----

회 람								
--------	--	--	--	--	--	--	--	--

조 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3일

포 항 시 장 박 승 호

포항시 조례 제 1084호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개정으로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은 일반직으로 임용 가능한 시점으로 한다.

②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해소되어 결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신규채용을 금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7.5% 이내	30% 이내	24.5% 이내	10%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4.5% 이내	13.5% 이내	20% 이내	34% 이내	28% 이상

3. 연구직 · 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6% 이내	94% 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6급상당 이상	7급상당
비 율	<u>40%</u> 이내	<u>60%</u> 이상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청	읍면동
총 계	1,960	623	37	210	260	306	524
정무직 계	1	1	—	—	—	—	—
시 장	1	1	—	—	—	—	—
일반직 계	1,600	504	26	156	160	262	492
2 급	1	1	—	—	—	—	—
3 급	—	—	—	—	—	—	—
4 급	12	5	1	2	2	2	—
5 급	96	34	4	5	12	12	29
6급 이하 계	1,491	464	21	149	146	248	463
별정직 계	3	1	—	1	1	—	—
5급상당							
6급상당이하 계	3	1		1	1		
연구직 계	5	2	—	—	3	—	—
연구관							
연구사	5	2		—	3		
지도직 계	40	—	—	40	—	—	—
지도관	3	—	—	3	—	—	—
지도사	37	—	—	37	—	—	—
기능직 계	311	115	11	13	96	44	32

1. 개정이유

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라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960명 → 1,960명(변동 없음)

- 일 반 직 : 1,577명 → 1,600명(+23명)
- 별 정 직 : 26명 → 3명(△23명)
- 연 구 직 : 4명 → 5명(+1명)
- 기 능 직 : 312명 → 311명(△1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

- 본 청 : 623명 → 623명(변동 없음)
- 의 회 : 37명 → 37명(“)
- 직속기관 : 210명 → 210명(“)
- 사 업 소 : 260명 → 260명(“)
- 구 청 : 306명 → 306명(“)
- 읍 면 동 : 524명 → 524명(“)

다. 정원책정기준 조정

- 별정직

구 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현 행	7%이내	34%이내	39%이내	18%이내	2%이상
개 정		40%이내	60%이상		
증 감	△7%	증6%	증21%	△18%	△2%

라. 직급·직렬별 정원조정

-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23명)
 - 별정6급(보건진료원) 23명 ⇒ 0명
 - 보건진료 6급 +6명, 보건진료 7급 +7명, 보건진료 8급 +10명
- 체계적 기록물관리를 위한 기록연구사 배치
 -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기록연구사 배치
 - 기능10급 △1명 ⇒ 연구사(기록연구사) +1명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3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조례 제 1085호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길 7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전통문화교육관
2. 전통음식체험관
3. 전통숙박체험관
4. 그 밖의 체험관 내 각종 시설 등

제4조(사업)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문화교육, 전통음식체험, 전통숙박체험 등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전통문화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2일, 설날 및 추석연휴 다음날, 매주 월요일
2. 체험관의 시설 점검,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6조(사용신청) ① 체험관 사용 및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2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체험관 사용 및 프로그램 수강 신청인이 사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험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체험관의 시설물 보호나 그 밖에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체험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
3.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4. 타인에게 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
6. 그 밖에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

제9조(사용료 등) 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1. 체험관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 및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전액
3. 체험 및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할 때는 전액 반환하고, 그 외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②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체험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운영비 등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수탁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등) 체험관 이용자가 시설이나 기물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민간위탁사무 중 “문화예술과”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포항 전통문화체험관 관리·운영

【별표 1】

사용료 기준(제9조 관련)

○ 시설 사용

시설명	기준	이용료	비고
숙박관	1실 / 1박	60,000원	□ 1실 수용인원 8명 □ 숙박시간은 입실(당일) 16:00 ~ 퇴실(익일)12:00
교육관 (강당 및 세미나실)	1실 / 1시간	20,000원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전통문화체험관 사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용신청자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용목적		
	사용시설(강좌)		
	사용기간		
	사용인원(명)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문화체험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이
의
도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전통문화체험관 사용신청 접수중

접수번호 제 호		
사용신청자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용목적	
	사용시설(강좌)	
	사용기간	
	사용인원(명)	

위와 같이 전통문화체험과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50

포항시장 (직인)

■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통문화체험관 사용변경(취소)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용신청자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용목적	
	사용시설(강좌)	
	사용기간	
	사용인원(명)	
	변경(취소) 사유	
	변경전	변경후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전통문화체험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전통문화체험관 사용허가서

사용 신청자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내용	사용목적
	사용시설(강좌)
	사용기간
	사용인원(명)

사용료	사용료	납부기한
	산출내역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문화체험관 사용을 허가하오니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항시장 (직인)

■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전통문화체험관 사용료 반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용신청자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용기간		
	반환대상인원(명)		
	반환사유		
	사용료 납부액		반환금액(원)
	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문화체험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1. 개정이유

전통문화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통문화교육관, 전통숙박체험관, 전통음식 체험관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체험관의 위치를 규정함 (안 제2조)

-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길 7 일원

나. 전통문화체험관 시설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시설 : 전통문화교육관, 전통음식체험관, 전통숙박체험관 등
- 사업:전통문화교육, 전통음식체험, 전통숙박체험 등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통문화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다. 전통문화체험관 휴관 및 개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전통문화체험관 사용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전통문화체험관 사용료 등의 기준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바. 전통문화체험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부터 제13조까지)

- 체험관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함

사. 전통문화체험관의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함(안 제15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3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조례 제 1086호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포항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 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u>< 신 설 ></u>	<u>제13조의 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 시간의 제한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포항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 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u> <u>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u> <u>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한다.</u>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안 제13조의 2)
 - 영업시간의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3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조례 제 1087호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포항시 시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 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

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 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경상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
2.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3.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 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사람

제6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 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포항시 관할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 및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하고, 고용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신규투자자로 취득한 부동산은 포함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 ② 제1항의 세액공제의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10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의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포항시 시세 감면조례」 제9조에 따른다.

■ 포항시 시세 감면조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규정)			
관계 증명 서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미색 모조 80g/㎡)

(뒤쪽)

작성방법

1. [] 란은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이므로 신청인은 적지 않습니다.
2.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3.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 칸으로 둡니다.
6.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해당 지번)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결정세액: 감면결정 전의 당초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신청사유: 감면규정 및 사유를 적습니다.
14. 관계증명서류: 관련된 증명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 포항시 시세 감면조례 [별지 제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당 초 결정세액	감 면 결정세액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결정 사유							

끝.

행 정 기 관 의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개정이유

-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 감면 납발 방지를 위해 조례에 규정된 일부 감면규정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시세감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 없는 조문 등을 폐지하고 감면규정을 명확화 하여 세무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온 사항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현행조례 제3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삭제
 - 관련법규 개정 및 감면규정 명확화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용조문 변경 (안 제9조, 제13조)
 - 감면 일몰기한이 종료된 조문(현행조례 제9조)삭제
-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2011.12.31)종료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3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조례 제 1088호

포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4.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5.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6. “관급공사”란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7.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2억원 이상의 공사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서 제출) 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제출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준공 대금 지급 시까지 관리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임금지불서약서)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 체결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기계임대)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 ①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제출된 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와 공사감독자로부터 받은 근로자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예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사전 예

고제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및 실적보고) 시장은 매년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사역내역서(제4조 관련)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공사기간 :

근로자		사역일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 일간)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를 사역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포 항 시 장 박 승 호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제4조 관련)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 사용주		사용 일수	연 락 처	비 고
성명	주소			
		(~ 일간)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를 사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포 항 시 장 박 승 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임금 지불 서약서(제5조 관련)

저희 업체에서는 포항시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포항시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상의 임금(건설기계임대료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포 항 시 장 박 승 호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임금 청구 확인서(제7조 관련)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공사기간 :

근로자		사역일	청구금액(원)	본인확인 (인)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 일간)				
합계						

상기 공사(용역)사업에서 근로자의 임금 청구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포 항 시 장 박 승 호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제7조 관련)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사용주		사용일	임대료 청구금액(원)	본인확인 (인)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 일간)				
합계						

상기 공사(용역)사업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포항시장 박승호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체불임금(임대료) 신고서(제9조 관련)

신 고 자	성명		연락처	☎ : 휴대폰 :
	주소			
신고방법		서면신고/ 전화신고		
※ 체불 임금 사업장	업체명			
	주 소			
신고내용 (상담내용)				

※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일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사업장을 기재한다.

1. 제정이유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을 보호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 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적용대상 및 공사·용역사업 범위(안 제3조)
- 다. 사업수행 시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라.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마.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바. 홍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장애인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3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조례 제 1089호

포항시 장애인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상의 명칭) 이 조례에 따른 상(賞)의 명칭은 포항시 장애인상 (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수상부문 및 인원) 이 상의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부문(1명):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하여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2. 장애인봉사 부문(1명 또는 기관단체) :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제5조(이중시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장애인상을 이중으로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장애인으로 한다.

제7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읍·면·동장, 장애인 관련단체장, 학교장 등이 추천한 자로 하되,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수상대상자의 선정) ① 수상대상자는 시 장애극복상 공적심사위원회 (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의회의원, 장애인복지단체의 장,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복지 환경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해당연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민복지 과장이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이 된다.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1회 시상하고 그 시기는 장애인의 날에 시상 한다.

제12조(상패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상의 명칭 규정(안 제3조)

– 상의 명칭을 “포항시 장애인상” 으로 함

다. 수상부문은 장애인상 1명, 장애인봉사상 1명 또는 1개 기관 단체로 함(안 제4조)

라.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 수여금지(안 제5조)

마. 수상후보자의 자격명시(안 제6조)

– 포항시 관내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바. 수상후보자 추천 명시(안 제7조)

– 읍·면·동장, 장애인관련단체장 및 학교장이 추천하되 읍·면·동장이 추천할 경우 주민 20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함

사. 수상대상자의 선정 (안 제8조)

– 수상대상자는 포항시 장애극복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함

– 수상자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

아. 포항시 장애극복상 공적심사위원회에 대해 규정(안 제9조)

–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해당연도 공적심사 끝난 후 자동 해촉됨

자. 시상 시기는 매년 1회, 장애인의 날에 시상 (안 제11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3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조례 제 1090호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급식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 등 교육기관 및 시설의 급식에 우선 사용하여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 대상에게 시행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매비를 말한다.
5.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6.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란 농민들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 농·축산물(유기농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 농산물)과 이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7.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써,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농·축·수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
 - 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 다.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 라.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수산물
 - 마. 원료의 가공·유통과정 중 방부제, 글루타민산나트륨(MSG) 등의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 바. 경상북도지사 및 포항시장이 인증하는 농특산물
8. “학교급식지원센터”란 급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 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을 지도·감독하고 급식정책을 총괄하며, 급식에 공급 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 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임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의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또는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 사용
 2.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 질 향상
 3. 건강한 식생활 발전을 위한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소요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② 시장은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2.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안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대상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 집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한다.

- ②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 등을 통하여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따라 계약 재배한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농·축·수산물은 친환경 식재료를 우선 지원한다.
- ④ 계약재배는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에 참여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를 우선 한다.
- ⑤ 시장은 급식비용 지원체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치원,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어린이 집의 장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시장이 이를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집계하여 시청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과 예결산내용 및 매월의 식재료 구입 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등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식재료 공급자의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의 적정 공급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부당사례 적발 시는 시장에게 식재료 공급자의 선정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지원대상자는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급식 지원대상, 지원 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시장
2. 업무 관련 담당국·소장
3. 교육지원청 업무관련 담당과장
4.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장
5. 포항시의회 의원
6. 농업생산자 단체 추천인
7. 영양사협회 추천인
8. 학부모단체 추천인
9. 교원단체 추천 교사
10. 시민단체 추천인
11. 유치원 및 어린이 집 시설 추천인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재임기간 내 당연직으로 하고,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의 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 (회의소집)**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중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친환경급식지원 대상학교와 지원규모,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무상급식대상 및 지원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의 품질, 영양 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다양한 범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급식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에 사용될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의 정책, 교육, 홍보 등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적 기능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2. 재배농가, 생산자단체와의 재배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3. 공동식단안 및 식재료의 품질기준안 마련
4. 유통 및 공급 관리
5.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

③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자원 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 ④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⑤ 지원센터는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 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 현황과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의 생산·공급 관련 정보를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과 예결산내용 및 매월 식재료 구입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졌거나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 조례 제8조(학교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의거 위촉된 위원은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제정이유

- 학교급식 여건 변화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급식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규정함 (안 제4조)
 -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 집
- 학교급식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지원대상자 및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3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조례 제 1091호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서 정한 운송사업자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4. 차고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면제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 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3.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4조(의무 등)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부과하는 규정은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음에 따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안 제3조)**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나. 차고지 설치면제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됨

규 칙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3일

포 항 시 장 박 승 호

포항시 규칙 제563호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라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및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정원 규칙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960명 → 1,960명(변동 없음)

- 일 반 직 : 1,577명 → 1,600명(+23명)
- 별 정 직 : 26명 → 3명(△23명)
- 연 구 직 : 4명 → 5명(+1명)
- 기 능 직 : 312명 → 311명(△1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

- 본 청 : 623명 → 623명(변동 없음)
- 의 회 : 37명 → 37명(“)
- 직속기관 : 210명 → 210명(“)
- 사 업 소 : 260명 → 260명(“)
- 구 청 : 306명 → 306명(“)
- 읍 면 동 : 524명 → 524명(“)

다. 정원책정기준 조정

○ 별정직

구 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현 행	7%이내	34%이내	39%이내	18%이내	2%이상
개 정		40%이내	60%이상		
증 감	△7%	증6%	증21%	△18%	△2%

라. 직급·직렬별 정원조정

-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23명)
 - 별정6급(보건진료원) 23명 ⇒ 0명
 - 보건진료 6급 +6명, 보건진료 7급 +7명, 보건진료 8급 +10명
- 체계적 기록물관리를 위한 기록연구사 배치
 -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기록연구사 배치
 - 기능10급(기계원·조무원) △1명 ⇒ 연구사(기록연구사) +1명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표(제2조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총 계	1,960	623	37	210	260	306	151	169	204
정 무 직 계	1	1	-	-	-	-	-	-	-
지방정무직	1	1	-	-	-	-	-	-	-
별 정 직 계	3	1	-	1	1	-	-	-	-
6급상당 소 계	1	1	-	-	-	-	-	-	-
지방별정직 6급 (비서)	1	1	-	-	-	-	-	-	-
7급상당 소 계	2	-	-	1	1	-	-	-	-
지방별정직 7급 (농기계교육교관)	1	-	-	1	-	-	-	-	-
지방별정직 7급 (여성교육강사)	1	-	-	-	1	-	-	-	-
연 구 직 계	5	2	-	-	3	-	-	-	-
지방학예연구사	1	1	-	-	-	-	-	-	-
지방보건연구사	1	-	-	-	1	-	-	-	-
지방환경연구사	2	-	-	-	2	-	-	-	-
지방기록연구사	1	1	-	-	-	-	-	-	-
지 도 직 계	40	-	-	40	-	-	-	-	-
지 도 관 소 계	3	-	-	3	-	-	-	-	-
지방농촌지도관	3	-	-	3	-	-	-	-	-
지 도 사 소 계	37	-	-	37	-	-	-	-	-
지방농촌지도사	37	-	-	37	-	-	-	-	-
일 반 직 계	1,600	504	26	156	160	262	131	157	204
2 급 소 계	1	1	-	-	-	-	-	-	-
지방이사관	1	1	-	-	-	-	-	-	-
4 급 소 계	12	5	1	2	2	2	-	-	-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지방서기관	1	-	1	-	-	-	-	-	-
지방기술서기관	2	-	-	2	-	-	-	-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9	5	-	-	2	2	-	-	-
5 급 소 계	96	34	4	5	12	12	4	10	15
지방행정사무관	10	4	3	-	1	2	-	-	-
지방시설사무관	4	3	-	-	1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	-	-	-	-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3	3	-	-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1	-	-	-	1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1	-	-	-	1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2	-	-	2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9	12	1	-	2	4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1	1	-	-	-	-	-	-	-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1	-	-	-	2	-	-	-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	-	-	1	-	-	-	-
지방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1	-	-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1	-	-	-	1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	-	-	-	-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8	4	-	-	2	-	-	-	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4	1	-	-	1	-	-	-	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1	-	-	1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	-	-	-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	-	-	-	-	-	-	3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2	-	-	-	-	-	1	1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복지사무관	5	-	-	-	-	2	-	3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	-	-	-	-	1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	-	-	1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5	2	-	-	-	-	-	1	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1	-	-	-	-	-	-	-	1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4	-	-	-	-	2	-	-	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2	-	-	-	-	-	-	-	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1	1	-	-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1	1	-	-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	-	-	-	-	-	-	1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1	-	-	-	-	-	-	1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2	-	-	-	-	-	1	1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2	-	-	-	-	-	1	1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	-	-	-	-	-	1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1	-	-	-	-	-	-	1	-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2	-	-	2	-	-	-	-	-
6 급 소 계		432	159	6	33	48	70	39	47	30
지방행정주사		136	69	4	1	18	22	2	1	19
지방세무주사		8	2	-	-	-	6	-	-	-
지방사회복지주사		4	2	-	-	-	-	2	-	-
지방전산주사		1	1	-	-	-	-	-	-	-
지방공업주사		11	5	-	-	6	-	-	-	-
지방농업주사		4	-	-	2	-	2	-	-	-
지방녹지주사		6	2	-	-	-	4	-	-	-
지방해양수산주사		2	2	-	-	-	-	-	-	-
지방보건주사		1	1	-	-	-	-	-	-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지방의료기술주사		1	-	-	1	-	-	-	-	-
지방보건진료주사		6	-	-	6	-	-	-	-	-
지방시설주사		47	20	-	-	9	14	4	-	-
지방통신주사		1	1	-	-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22	2	-	-	1	4	4	9	2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30	9	-	-	-	2	2	8	9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2	2	-	-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		5	-	-	-	5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9	8	-	-	1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30	-	-	3	1	-	6	20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		3	3	-	-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14	-	-	2	-	4	6	2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6	2	-	-	-	4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24	13	1	-	1	4	4	1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통신주사		1	1	-	-	-	-	-	-	-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2	2	-	-	-	-	-	-	-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3	-	-	-	3	-	-	-	-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4	3	-	-	1	-	-	-	-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1	-	-	-	-	-	-	-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복지주사		4	-	-	-	-	4	-	-	-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	-	1	-	-	-	-	-
지방해양수산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1	-	-	-	-	-	-	-
지방복지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4	3	-	-	1	-	-	-	-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수의주사		4	-	-	3	-	-	1	-	-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10	-	-	10	-	-	-	-	-

직렬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2	-	-	2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4	-	-	-	-	-	3	1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1	1	-	-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복지주사	1	-	-	-	-	-	-	1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	6	-	-	-	-	-	2	4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3	-	-	-	-	-	3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1	-	-	-	-	-	-	-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1	-	-	-	1	-	-	-	-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2	-	-	2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1	-	-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1	-	1	-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1	1	-	-	-	-	-	-	-
7 급 소 계	471	164	8	53	52	90	30	39	35
지방행정주사보	154	66	6	5	14	26	10	1	26
지방세무주사보	29	2	-	-	1	12	5	9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26	6	-	-	1	6	3	4	6
지방전산주사보	1	1	-	-	-	-	-	-	-
지방사서주사보	1	-	-	-	1	-	-	-	-
지방공업주사보	26	15	-	-	11	-	-	-	-
지방농업주사보	4	-	-	2	-	2	-	-	-
지방복지주사보	7	3	-	-	-	4	-	-	-
지방해양수산주사보	9	5	-	-	-	-	-	4	-
지방보건주사보	11	1	1	7	-	2	-	-	-
지방식품위생주사보	7	1	-	-	-	6	-	-	-
지방의료기술주사보	6	-	-	6	-	-	-	-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지방간호주사보		12	-	-	12	-	-	-	-	-
지방보건진료주사보		7	-	-	7	-	-	-	-	-
지방환경주사보		9	8	-	-	1	-	-	-	-
지방시설주사보		68	30	1	1	11	20	3	2	-
지방통신주사보		3	1	-	-	-	2	-	-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전산주사보		6	5	-	-	1	-	-	-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사서주사보		2	-	-	-	2	-	-	-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공업주사보		3	-	-	-	3	-	-	-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농업주사보		33	-	-	2	2	2	8	18	1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보건주사보		5	1	-	1	-	2	1	-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환경주사보		1	1	-	-	-	-	-	-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12	7	-	-	1	2	-	-	2
지방전산주사보 또는 지방공업주사보		1	1	-	-	-	-	-	-	-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환경주사보		9	5	-	-	2	2	-	-	-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2	2	-	-	-	-	-	-	-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보건주사보		2	1	-	-	1	-	-	-	-
지방환경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1	1	-	-	-	-	-	-	-
지방농업주사보 또는 지방복지주사보		2	-	-	-	-	2	-	-	-
지방복지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1	1	-	-	-	-	-	-	-
지방농업주사보 또는 지방수의주사보		5	-	-	4	-	-	-	1	-
지방보건주사보 또는 지방간호주사보		6	-	-	6	-	-	-	-	-
8 급 소 계		389	106	7	56	38	55	37	27	63
지방행정서기		139	32	5	2	8	18	10	7	57
지방세무서기		26	2	-	-	2	10	8	4	-
지방사회복지서기		20	5	-	-	-	4	1	4	6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지방전산서기		4	3	-	-	1	-	-	-	-
지방사서서기		2	-	-	-	2	-	-	-	-
지방공업서기		20	5	-	-	12	2	1	-	-
지방농업서기		4	-	-	2	-	-	1	1	-
지방녹지서기		6	4	-	-	-	2	-	-	-
지방해양수산서기		5	2	-	-	-	-	2	1	-
지방보건서기		20	-	-	17	-	3	-	-	-
지방의료기술서기		10	-	-	10	-	-	-	-	-
지방간호서기		2	1	-	1	-	-	-	-	-
지방보건진료서기		10	-	-	10	-	-	-	-	-
지방환경서기		3	3	-	-	-	-	-	-	-
지방시설서기		58	30	-	-	8	12	5	3	-
지방통신서기		1	1	-	-	-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세무서기		1	1	-	-	-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전산서기		7	5	2	-	-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공업서기		1	1	-	-	-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농업서기		15	-	-	3	-	2	9	1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녹지서기		1	1	-	-	-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해양수산서기		1	-	-	-	-	-	-	1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보건서기		9	3	-	-	1	-	-	5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환경서기		1	1	-	-	-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시설서기		2	1	-	-	1	-	-	-	-
지방전산서기 또는 지방통신서기		1	1	-	-	-	-	-	-	-
지방공업서기 또는 지방시설서기		2	2	-	-	-	-	-	-	-
지방공업서기 또는 지방통신서기		1	1	-	-	-	-	-	-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지방공업서기 또는 지방환경서기		4	1	-	-	3	-	-	-	-
지방농업서기 또는 지방수의서기		3	-	-	1	-	2	-	-	-
지방보건서기 또는 지방의료기술서기		2	-	-	2	-	-	-	-	-
지방보건서기 또는 지방간호서기		8	-	-	8	-	-	-	-	-
9 급 소 계		199	35	-	7	8	33	21	34	61
지방행정서기보		63	17	-	1	3	-	6	8	28
지방세무서기보		32	-	-	-	-	12	8	12	-
지방사회복지서기보		43	3	-	-	-	4	3	2	31
지방전산서기보		2	2	-	-	-	-	-	-	-
지방공업서기보		1	1	-	-	-	-	-	-	-
지방농업서기보		7	-	-	-	-	-	2	5	-
지방녹지서기보		4	1	-	-	1	2	-	-	-
지방보건서기보		9	1	-	5	-	3	-	-	-
지방환경서기보		2	-	-	-	-	2	-	-	-
지방시설서기보		19	4	-	1	3	6	-	5	-
지방통신서기보		3	3	-	-	-	-	-	-	-
지방행정서기보 또는 지방사회복지서기보		4	-	-	-	-	-	2	-	2
지방행정서기보 또는 지방전산서기보		3	2	-	-	1	-	-	-	-
지방행정서기보 또는 지방시설서기보		5	1	-	-	-	2	-	2	-
지방농업서기보 또는 지방수의서기보		2	-	-	-	-	2	-	-	-
기 능 직 계		311	115	11	13	96	44	20	12	-
기 능 6 급 소 계		13	7	-	-	6	-	-	-	-
6급 지방전기장		3	1	-	-	2	-	-	-	-
6급 지방기계장		3	-	-	-	3	-	-	-	-
6급 지방운전장		3	3	-	-	-	-	-	-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6급 지방선박항해장		1	1	-	-	-	-	-	-	-
6급 지방사무실무장		3	2	-	-	1	-	-	-	-
기 능 7 급 소 계		39	23	-	1	10	4	1	-	-
7급 지방통신장		1	1	-	-	-	-	-	-	-
7급 지방전기장		4	1	-	-	3	-	-	-	-
7급 지방기계장		15	5	-	-	7	2	1	-	-
7급 지방운전장		7	7	-	-	-	-	-	-	-
7급 지방화공장		1	1	-	-	-	-	-	-	-
7급 지방선박항해장		2	2	-	-	-	-	-	-	-
7급 지방사무실무장		9	6	-	1	-	2	-	-	-
기 능 8 급 소 계		60	33	1	1	16	7	2	-	-
8급 지방건축원		3	1	-	-	-	2	-	-	-
8급 지방통신원		2	2	-	-	-	-	-	-	-
8급 지방전기원		4	-	-	-	4	-	-	-	-
8급 지방기계원		18	8	-	-	10	-	-	-	-
8급 지방열관리원		2	1	-	1	-	-	-	-	-
8급 지방운전원		15	9	-	-	1	4	1	-	-
8급 지방화공원		1	-	-	-	1	-	-	-	-
8급 지방선박기관원		1	1	-	-	-	-	-	-	-
8급 지방농림원		1	1	-	-	-	-	-	-	-
8급 지방사무실무원		10	8	1	-	-	1	-	-	-
8급 지방조무원		3	2	-	-	-	-	1	-	-
기 능 9 급 소 계		100	36	6	6	31	16	2	3	-
9급 지방통신원		2	1	1	-	-	-	-	-	-
9급 지방전화상담원		3	3	-	-	-	-	-	-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9급 지방전기원		5	-	-	-	5	-	-	-	-
9급 지방기계원		23	6	-	-	17	-	-	-	-
9급 지방열관리원		2	1	-	-	1	-	-	-	-
9급 지방선박항해원		1	1	-	-	-	-	-	-	-
9급 지방운전원		32	11	1	4	2	10	1	3	-
9급 지방화공원		2	-	-	-	2	-	-	-	-
9급 지방농림원		1	-	-	1	-	-	-	-	-
9급 지방위생원		1	1	-	-	-	-	-	-	-
9급 지방사무실무원		25	10	4	1	3	6	1	-	-
9급 지방전화상담원 또는 9급 지방사무실무원		2	2	-	-	-	-	-	-	-
9급 지방기계원 또는 9급 지방사무실무원		1	-	-	-	1	-	-	-	-
기능10급 소 계		99	16	4	5	33	17	15	9	-
10급 지방전화상담원		1	1	-	-	-	-	-	-	-
10급 지방전기원		3	1	-	-	2	-	-	-	-
10급 지방기계원		2	-	-	-	2	-	-	-	-
10급 지방운전원		29	2	1	1	6	2	9	8	-
10급 지방위생원		1	-	-	-	1	-	-	-	-
10급 지방사무실무원		36	11	3	1	8	7	5	1	-
10급 지방조무원		7	-	-	1	3	2	1	-	-
10급 지방전기원 또는 10급 지방위생원		2	-	-	-	2	-	-	-	-
10급 지방전기원 또는 10급 지방조무원		5	-	-	-	5	-	-	-	-
10급 지방기계원 또는 10급 지방열관리원		3	1	-	2	-	-	-	-	-
10급 지방기계원 또는 10급 지방위생원		2	-	-	-	2	-	-	-	-
10급 지방기계원 또는 10급 지방조무원		6	-	-	-	2	4	-	-	-
10급 지방사무실무원 또는 10급 지방방호원		2	-	-	-	-	2	-	-	-

훈 령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2012년 4월 3일

포 항 시 장 박 승 호

포항시 훈령 제247호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 각호의”를 제4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 6조제2항 각호”을 “별표의 일상감사대상”으로 하며, 제8호 중 “제4조 각호의”를 제4조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별표와 같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과 제2항, 제4항,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 을 “제4조제1항” 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0조제3항에 의한 계약부서의 장의 협의는 집행부서의 장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제6항과 제7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항 각 호의” 를 “중간검사 대상” 으로 하고, “의뢰” 를 “요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뢰” 를 “요청” 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의뢰” 를 “요청” 으로 하고, “다만 중간검사를 받은 사업은 컨설팅 감사에서 제외한다” 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일상감사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에 의거 일상감사요청서, 중간검사 및 컨설팅 감사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집행부서의 장은 계약방법 및 재정심사 대상사업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산관리업무의 경우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조서·회계 연도별 결산서 확정 전에, 보조금 지원업무의 경우 교부결정전에 일상감사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집행부서의 장은 계약방법 및 재정심사가 병행되거나 계약방법만 일상감사 요청할 때에는 계약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집행부서의 장은 재정심사 대상사업 중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금액(설계변경전의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 중 증액금액이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총 증액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제6항 중 “제9조” 를 “제10조”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9조제7항” 을 “제11조제7항” 으로 한다.

제14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⑧ 감사담당관은 재정심사에 관한 일상감사결과 심사요청액에 대한 심사 평가액의 비율(절감율)이 2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사유서를 청구하고 「포항시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결과를 내부통제 평가업무에 연계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

대상 업무	범 위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 주요정책, 주요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진도파악을 하고 있거나 그 결과를 심사평가 등의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의 집행업무(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업무보고 중 핵심기능과 관련된 과제,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항 등) • <u>시장의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사항</u>										
계약업무	• 재정심사(추정금액)<table><tr><th rowspan="2">공 사</th><th colspan="2">용 역</th><th rowspan="2">물 품</th></tr><tr><th>학술일반용역</th><th>건설기술용역</th></tr><tr><td>1억원 이상</td><td>1천만원 이상</td><td>2천만원 이상</td><td>5백만원 이상</td></tr></table> - 건설공사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절대값의 합이 해당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5억원 미만의 재정심사 대상사업 중 총 증액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계약방법(추정가격) - 수의계약 : 공사·용역·물품 2천만원 이상 1인견적 및 분할수의계약 - 제한경쟁 입찰계약 : 전문공사 1억원 이상, 종합공사 2억원 이상, 용역·물품 5천만원 이상 실적·특정규격 등 2가지 이상 제한사항 - 지명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조달요청에 관한 사항(제3자 단가계약 제외) - 그 밖의 계약부서의 장이 특별히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약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그 밖의 기타 공사를 말함 ※용역은 학술연구용역(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그 밖의 일반용역을 말함 ※물품은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 구매 등을 말함 • 국·공유재산 등 자산매각·매입에 관한 계약 - 재산취득 및 처분 예정 금액 1억원 이상 • <u>민간위탁 및 민간대행에 관한 계약 - 추정금액 1억원 이상</u> • <u>연간 단가계약체결 5천만원 이상, 연간 단가계약 10% 이상 변경에 관한 사항</u>	공 사	용 역		물 품	학술일반용역	건설기술용역	1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공 사	용 역		물 품								
	학술일반용역	건설기술용역									
1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대상업무	범 위
예산관리 업 무	•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 • 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조서) • <u>예산의 결산에 관한 사항(회계연도별 결산서)</u> •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보 조 금 지원업무	• <u>교부결정액 1억원 이상</u>(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재정심사 실시
중간감사	• 일상감사를 받은 사업 중 총공사비 <u>5억원 이상</u> •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계약심사를 완료한 사업 또는 조달요청한 사업 중 총 공사비 <u>5억원 이상</u> • 보조금 지원사업 중 공사비 교부결정액 <u>1억원 이상</u> • 기술직군이 아닌 집행부서의 장이 집행하는 사업 중 총공사비 1억5천만원 이상
기타업무	• 소속직원의 임용, 포상·징계 등 인사 및 정원 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 • 예산·회계 등과 관련된 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주요사항 • 중요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 <u>소속 공무원 등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워크숍, 연찬회, 세미나 실시</u>에 관한 사항 • <u>그 밖에 시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별지 제1호 서식】

일상감사 요청서

구 분	☐ 주요정책집행업무 ☐ 예산관리업무 ☐ 보조금지원업무 ☐ 기타업무					
사업명 (업무명)						
예산현황	합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부담	기 타
세출과목						
집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업무개요/ 향후계획						
기대효과						

※ 첨부서류

1.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2. 예산변경내역, 보조금 교부신청서
3. 기타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사계약 일상감사 요청서

구 분	☐ 계약방법 ☐ 재정심사					
공 사 명				공사기간		
공사위치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제한경쟁입찰 ☐ 조달요청 ☐ 지명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					
공사금액	총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외주위탁비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외주위탁비 :		
구 분	합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부담	기 타
예 산 액						
세출과목						
설 계 자	상 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집행부서	담 당 자 : (전화번호 :)					

◦공사개요 :

※ 첨부서류

1. 입찰계약공고문, 지방서, 제한사유, 수의계약 요청서
2. 설계도서 (원가계산서, 도면, 지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 출서 등)
3. 기타 감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3호 서식】

용역계약 일상감사 요청서

구 분	☐ 계약방법 ☐ 재정심사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위치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제한경쟁입찰 ☐ 조달요청 ☐ 지정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					
용역금액	총용역비 : 천원			금회용역비 : 천원		
구 분	합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 부 담	기 타
예산액						
세출과목						
예정원가 작성자	담당부서 : 작성자 : (전화번호 :)					

◦ 용역개요 :

※ 첨부서류

1. 입찰계약 공고문, 지방서, 제한사유, 수의계약 요청서
2.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3. 설계내역서
4. 수량산출서
5. 기타 감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별지 제4호 서식】

물품구매(제조·수리) 계약 일상감사 요청서

구 분	☐ 계약방법 ☐ 재정심사					
건 명						
계약방법	☐ <u>수의계약</u> ☐ <u>제한경쟁입찰</u> ☐ <u>조달요청</u> ☐ <u>지명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u> ☐ <u>기타</u>					
산출금액	원(총물품구매비: 원, 금회구매비: 원)					
구 분	합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 부 담	기 타
예 산 액						
세출과목						
구매예정일						
집행부서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첨부서류

1. 입찰계약 공고문, 지방서, 제한사유, 수의계약 요청서
2.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4. 기타 감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인쇄물계약 일상감사 요청서

구 분	☐ 계약방법 ☐ 재정심사					
건 명			인쇄예정일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제한경쟁입찰 ☐ 조달요청 ☐ 지명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					
산출금액	원(총물품구매비: 원, 금회구매비: 원)					
구 분	합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 부담	기 타
예 산 액						
세출과목						
집행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

1. 규격 및 수량 : 절(mm × mm), 부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서류

1. 입찰계약 공고문, 시방서, 제한사유, 수의계약 요청서
2.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및 사양서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감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설계변경(계약) 일상감사 요청서

구 분		〔 〕 계약방법		〔 〕 재정심사		
공사(사업)명				착공·준공일		
공사(사업) 개 요	당초					
	변경					
공사위치						
계약방법		〔 〕 수의계약		〔 〕 제한경쟁입찰		
		〔 〕 지명경쟁입찰		〔 〕 조달요청		
공사 (사업, 용역) 비	당초	총공사비 : 천원(도급비: 관급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변경	총공사비 : 천원(도급비: 관급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세출과목						
도급자(원설계자)						
업무담당(감독)자		직 :		성명 :		
				연락처 :		
감 리 자		업체명 :		책임감리자 :		
				연락처 :		
주변경사유						

※ 첨부서류

- 1. 입찰계약 공고문, 지방서, 제한사유, 수의계약 요청서
- 2. 변경 설계도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일상감사”란 <u>제4조 각 호의</u>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감사부서의 객관적인 의견을 판단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감사를 말함 (중간감사, 컨설팅 감사를 포함 한다) 2.(생 략) 3. “재정심사”란 <u>제6조제2항 각 호의</u>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석은 물론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것을 말함 4. ~ 7. (생 략) 8. “집행부서”란 <u>제4조 각 호의</u>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부서를 말함 가. ~ 마. (생 략) 9. ~ 10. (생 략) 제4조(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 ① 일상 감사의 대상업무 및 범위는 <u>다음 각 호와</u> 같다 1. <u>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 주요정책, 주요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진도파악을 하고 있거나 그 결과를 심사평가 등의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의 집행업무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 과제, 업무보고 과제 중 핵심기능과 관련된 과제, 그 밖의 역점시책과 관련된 정책 등)에 관한 사항</u> 2. <u>계약업무 : 계약방법 및 재정심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의 규정을 따른다.</u>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u>제4조의</u> ----- ----- ----- ----- ----- ----- 2.(현행과 같음) 3. ----- <u>별표의 일상감사대상</u> ----- ----- ----- ----- 4. ~ 7. (현행과 같음) 8. ----- <u>제4조의</u>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9. ~ 10. (현행과 같음) 제4조(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 ① ----- ----- <u>별표와</u> ----- -----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3. 예산관리업무 : 예산의 이용 및 운용, 예산의 이월, 예비비 집행,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지원업무 : 교부결정액 1억 5천만원 이상 5. 인사관리업무 : 소속직원의 임용, 포상·징계 등 인사 및 정원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 6. 법제업무 : 예산·회계 등과 관련된 규정 등의 주요 제정 및 개정 사항 7. 송무업무 : 중요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지시한 업무 ② (생 략) ③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의 종류, 인사관리 및 법제·송무 업무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각종 공사관련 보조금에 대해서는 재정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조(계약업무에 관한 일상감사) ① 계약방법 및 재정심사 등에 관한 일상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방법의 범위 가. 건설공사(전기, 소방, 통신 포함) : 기초금액 2천만원 이상, 단, 특별회계는 1천만원 이상 나. 건설기술(학술연구, 일반) 용역 : 기초금액 5백만원 이상 다. 물품 및 인쇄물의 구매·제조 : 기초금액 5백만원 이상 라. 건설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한 조달요청(제3자 단가계약 제외) : 기초금액 3천만원 이상	제6조(계약업무에 관한 일상감사) ①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2. 재정심사의 범위 가. 건설공사(전기, 소방, 통신 포함)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나. 건설기술(학술연구, 일반) 용역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다. 물품 및 인쇄물의 구매·제조 : 추정금액 7백만원 이상 라. 건설공사 설계변경(전기, 소방 통신포함) : 계약금액 5억원 이상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5억원 미만의 재정심사 대상사업 중 총중액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국·공유재산 등 자산매각·매입 관련 계약의 범위 : 재산취득 및 처분 예정금액 1억원 이상 ② 재정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바. 그 밖의 기타 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 분야의 기초 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과 나목 이외의 용역 3. 물품의 구매·제조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심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④ 계약방법에 관한 일상감사는 제1항 제1호 각 목의 범위 내에서 분할수의 계약이나 특허공법·신기술에 의한 공사 계약, 특허구매 계약, 그 밖에 계약부서의 장이 특별히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약에 한한다. ⑤ 계약방법 및 재정심사에 관한 일상 감사가 병행될 때는 재정심사결과에 따른다. 〈신설〉 ⑥ (생략) ⑦ (생략) 제7조(중간검사)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이 완료되기 전 주요 공정 시행 시 감사담당관에게 중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의 위법·부당성이나 부실시공이 예상될 때는 집행부서의 장이 의뢰하지 않더라도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중간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감사를 받은 사업 중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계약심사를 완료한 사업 중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3. 보조금 지원사업 중 공사비 교부결정액 1억5천만원 이상	① 제4조제1항 ----- -----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② 제10조제3항에 의한 계약부서의 장의 협의는 집행부서의 장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본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중간검사) ① ----- 별표의 중간검사 대상----- ----- -- 요청 ----- ② ----- ----- ----- -- 요청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현행	개정안
<u>4. 기술직군이 아닌 집행부서의 장이 집행하는 사업 중 총 공사비 1억 5천만원 이상</u> 제8조(컨설팅 감사) ① 일상감사를 받은 사업이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에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에게 컨설팅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중간검사를 받은 사업은 컨설팅 감사에서 제외한다. ② (생략) 제10조(일상감사 요청) ① 일상감사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에 의거 일상감사 요청서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중간검사 및 컨설팅 감사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재정심사 대상사업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조금 지원업무의 경우 교부결정 전에 일상 감사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재정심사 대상사업 중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금액 (설계변경전의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 중 증액금액이 10퍼센트를 초과 하거나 총 증액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를요청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재정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중 특별히 계약방법에 관한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	〈삭 제〉 제8조(컨설팅 감사) ① ----- ----- ----- 요청----- -----.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일상감사 요청) ① 일상감사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 까지에 의거 일상감사요청서, 중간검사 및 컨설팅 감사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계약방법 및 재정 심사 대상사업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예산관리업무의 경우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조서·회계연도별 결산서확정 전에, 보조금 지원업무의 경우 교부 결정전에 일상감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계약방법 및 재정 심사가 병행되거나 계약방법만 일상감사 요청할 때에는 계약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재정심사 대상사업 중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금액 (설계변경전의 계약금액) 10

현행	개정안
<u>정할 때에는 이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부서의 장은 반드시 감사담당관에게 계약방법에 관한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u>	<u>억원 이상의 공사 중 증액금액이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총 증액 금액이 5억원을 초과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u>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일상감사 방법) ① ~ ⑤ (생략)	제11조(일상감사 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감사담당관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제10조 ----- ----- ----- ----- ----- -----
제14조(일상감사 결과)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요청 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일상감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7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제외한다.	제14조(일상감사 결과)① ----- ----- ----- ----- ----- ----- ----- 제11조제7항 -----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집행부서의 장은 재정심사에 관한 일상 감사결과 심사요청액에 대한 심사평가비율이 전년도 평가율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사유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담당관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감사담당관은 재정심사에 관한 일상 감사결과 심사요청액에 대한 심사평가액의 비율(절감율)이 20퍼센트 이상을 초과 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사유서를 징구 하고 「포항시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16조(사후관리 및 평가) ① ~ ② (생략) ③ 감사담당관은 내부통제 업무와 연계하여 집행부서별 일상감사결과 이행평가표를 작성하여 매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제16조(사후관리 및 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결과를 내부통제 평가업무에 연계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1. 개정이유

일상감사 업무범위를 확대 실시하고, 일상감사 업무처리방법 및 절차 등을 개선하여 감사의 실효성 확보와 행정집행의 투명성 확보

2. 주요내용**가. 일상감사 업무범위 신설 및 확대**

- 계약업무
 - 용역 2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건설기술용역은 2천만원이상)
 - 물품 7백만원 이상 → 5백만원 이상
 - 계약방법
 - 공사·용역·물품 2천만원 이상 1인 견적 및 분할수의계약
 -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명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조달요청(제3자 단가계약 제외)
 - 연간 단가계약체결 5천만원 이상, 단가계약 10퍼센트 이상 변경
- 보조금업무
 - 교부결정액 1억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중간감사
 - 일상감사를 받은 사업 중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 5억원이상
 - 도 계약심사를 완료한사업 중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2-583호

포항시 지명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3. 29.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사와 문화의 변천과정에서 지명이 생성·변경·소멸을 반복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존하고, 현재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명의 통일을 기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지형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바른 지명을 사용토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포항시 지명위원회 관련법 「측량법」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관련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2. 3.29 ~ 4. 24

6. 의견제출

포항시 지명위원회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도시계획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3493, 팩스 054)270-3470, 이메일 6k5wxz@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포항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포항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문화예술과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를 “업무관련과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3인”을 “3명”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법」 제 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포항시 지명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문화예술과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략) 1. (생략)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 3인 이상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생략)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포항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관련과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 ②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3명 ----- 3. 그 밖에 ----- ④ (현행과 같음) ⑤ ----- 1명 -----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임기) -----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생략) 1. ~ 2. (생략)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 -----그 밖에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2-22호

포항장성동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08-151호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포항시 북구 장성동 1232번지 일대의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포항시청 건축과(054-270-3604)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2일

포항시장 박승호

1. 정비구역지정

- 가.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없음)

2. 정비계획 수립

-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사항(변경없음)
-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높이·연면적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6)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7)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변경)

기정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변경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8) 정비사업 시행방법(변경없음)
- 9)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1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 11) 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13)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변경없음)
- 14)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변경없음)
- 15) 기타 사·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변경없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의 사항에 관한 계획

-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1)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4.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5. 관계도면 (변경없음)

공 고

공고 제2012-20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일

포항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포 항 시 남 구 청 장

소하천명	사 업 개 요									비고
	공사명	공사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목적	
		시 점	중 점	축 제	호 안	기 타	착 공	준 공		
중태천	구룡포 중태천 정비공사	구룡포 눌태리 120	구룡포 눌태리 349	-	640m		2012. 04	2012. 01	재해예방	편입 사유지 35필지

열람서류

- 1. 실시설계도서(편입토지 조서 포함)
 - 2.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지형도)
-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구룡포 중대천 편입토지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소유자	
	시	읍	리				성명	주소
1	포항	구룡포	눌태	349	전	2,635	안옥성	포항시 북구 두호동 753 우방신천지타운 111/802
2	포항	구룡포	눌태	344	전	2,264	김봉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눌태리 229
3	포항	구룡포	눌태	346	전	66	김봉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눌태리 229
5	포항	구룡포	눌태	336	대	261	김갑임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6-1 경인일호주택 206
6	포항	구룡포	눌태	337	전	169	김갑임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6-1 경인일호주택 206
7	포항	구룡포	눌태	234	대	2,479	안수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눌태리 234
8	포항	구룡포	눌태	235	전	1,031	오남선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눌태리 229
9	포항	구룡포	눌태	236	전	1,203	오염진	영일군 구룡포읍 눌태리 233
10	포항	구룡포	눌태	249	대	585	손문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눌태리 243
11	포항	구룡포	눌태	248	전	1,157	손문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눌태리 243
12	포항	구룡포	눌태	247	전	912	오제홍	포항시 남구 상도동 621-5
12	포항	구룡포	눌태	347	전	2,737	이미옥 외 1인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58 두호아파트 22-401
15	포항	구룡포	눌태	343	전	883	안치성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눌태리 240
16	포항	구룡포	눌태	341	전	3,755	오환규	영일군 구룡포읍 눌태리 243
17	포항	구룡포	눌태	342	전	747	오창원	영일군 대보읍 강사리 8-2
18	포항	구룡포	눌태	339-1	전	268	오주기 외 1인	영일군 구룡포읍 눌태리 243
19	포항	구룡포	눌태	339-2	대	136	이병탁	대구 수성구 지산동 1070
20	포항	구룡포	눌태	339-3	대	400	이병탁	대구 수성구 지산동 1070
21	포항	구룡포	눌태	338-1	대	119	이연이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눌태리 338-1
22	포항	구룡포	눌태	338	대	225	황보태조	영일군 구룡포읍 눌태동 336
23	포항	구룡포	눌태	233	대	337	황보태조	영일군 구룡포읍 눌태리 336
24	포항	구룡포	눌태	228	전	198	오환규 외 4인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눌태리 243
28	포항	구룡포	눌태	250	답	1,579	김봉근	영일군 구룡포읍 눌태리 229
29	포항	구룡포	눌태	251	답	420	박금숙	울산 중구 서동 42-3 청구빌라 104호
30	포항	구룡포	눌태	252	답	1,532	박금숙	울산 중구 서동 42-3 청구빌라 104호
31	포항	구룡포	눌태	253	답	704	오환규	영일군 구룡포읍 눌태리 243
32	포항	구룡포	눌태	254	답	489	오제홍	포항시 남구 상도동 621-5
33	포항	구룡포	눌태	255-1	답	615	오제홍	포항시 남구 상도동 621-5
34	포항	구룡포	눌태	255-2	답	873	안치성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눌태리 240
35	포항	구룡포	눌태	256	답	863	김말순	포항시 남구 해도동 58-5
36	포항	구룡포	눌태	262-2	답	46	안용선	영일군 구룡포읍 눌태리 597
37	포항	구룡포	눌태	82	답	1,623	김태우	부산시 남구 광안동 1055-65
38	포항	구룡포	눌태	263-2	답	185	김용탁	영일군 구룡포읍 눌태리 16-3
40	포항	구룡포	눌태	84	답	1,471	오염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눌태리 74-2
41	포항	구룡포	눌태	85	답	1,702	정천수	영일군 구룡포읍 병포리 34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012년 3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2. 3. 29

포항시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시행일		3월 중	검사기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정수											
구분	검사항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강	공단	양덕	제2	택전	갈평	병포	약성	학야
			안계댐수		임하댐수	형산강 안계댐수	복류수 안계댐수	진전지	농대지수	곡강천 복류수	(수원공사)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홍해읍	신광·기개·압부	
미생물	1.일반세균(Total Colony Counts)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분원성대장균(E.coli/Fec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강상 유해영양물질	4.납(Pb)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볼소(F)	1.5mg/l이하	0.18	불검출	불검출	0.17	0.19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6.비소(As)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셀레늄(S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수은(Hg)	0.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시안(CN)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크롬(Cr)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암모니아성질소(NH ₃ -N)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질산성질소(NO ₃ -N)	10mg/l이하	2.5	0.8	1.0	2.5	2.6	0.9	1.7	1.3	1.1
	13.카드뮴(Cd)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보론(B)	1.0mg/l이하	0.04	0.01	0.02	0.04	0.04	불검출	0.02	0.02	0.03
	15.페놀(Phenol)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6.다이아지논(Diazinon)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강상 유해영양물질	17.파라티온(Parathion)	0.06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카바릴(Carbaryl)	0.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1.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2.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3.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4.벤젠(Benzen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톨루엔(Toluene)	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에틸벤젠(Ethyl Benzene)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7.크실렌(Xylene)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8.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0.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e)	0.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1.1,4-다이옥산(1,4-Dioxane)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32.유리잔류염소(Free residual chlorine)	4.0mg/l이하	0.48	0.47	0.41	0.47	0.59	0.55	0.52	0.50	0.83
	33.총트리할로메탄(THMs)	0.1mg/l이하	0.059	0.046	0.064	0.050	0.049	0.030	0.055	0.044	0.028
	34.클로로포름(Chloroform)	0.08mg/l이하	0.018	0.033	0.052	0.012	0.013	0.017	0.023	0.028	0.024
	35.클로랄하이드레이트(Chloral hydrate)	0.03mg/l이하	0.0098	0.0084	0.0078	0.0055	0.0063	0.0055	0.0080	0.0058	0.0017
	36.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Dibromoacetonitrile)	0.1mg/l이하	0.0021	불검출	불검출	0.0021	0.0021	불검출	0.0014	0.0070	불검출
	37.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Dichloroacetonitrile)	0.09mg/l이하	0.0021	0.0038	0.0037	0.0016	0.0016	0.0016	0.0019	0.0013	0.0018
	38.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Trichloroacetonitrile)	0.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9.할로아세트산(Haloacetic acids)	0.1mg/l이하	0.023	0.059	0.093	0.018	0.018	0.032	0.029	0.037	0.009
	40.브로모디클로로메탄(Bromodichloromethane)	0.03mg/l이하	0.021	0.011	0.012	0.018	0.018	0.010	0.020	0.012	0.004
	41.디브로모클로로메탄(Dibromochloromethane)	0.1mg/l이하	0.017	0.002	불검출	0.016	0.015	0.003	0.012	0.004	불검출

구 분	검 사 항 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 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학 야*
			안계댐수		임하댐수	형산강 복류수 안계댐수		진전지	눌대지수	곡강천 복류수	(수자원공사)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홍해읍	신광기계 일부
지 역 정 수 장	42.경도(Hardness)	300mg/ℓ이하	146	68	82	142	129	32	80	104	80
	43.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 ₄)	10mg/ℓ이하	1.8	4.7	4.1	2.1	1.4	3.2	2.0	2.4	4.7
	44.냄새(Odor)	무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5.맛(Taste)	무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6.동(Cu)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7.색도(Color)	5도이하	1	1	1	1	1	1	1	1	불검출
	48.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ABS)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9.수소이온농도(pH)	5.8-8.5	7.4	7.1	7.2	7.5	7.3	6.8	7.3	7.0	7.5
	50.아연(Zn)	3mg/ℓ이하	0.00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4	0.003	0.002	0.086	0.003
	51.염소이온(Cl ⁻)	250mg/ℓ이하	49	12	11	49	41	11	34	16	10
	52.증발잔류물(Total solids)	500mg/ℓ이하	256	97	117	275	261	74	186	183	120
	53.철(Fe)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4.망간(Mn)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5.탁도(Turbidity)	0.5NTU이하	0.08	0.11	0.08	0.08	0.08	0.12	0.11	0.09	0.09
	56.황산이온(SO ₄ ²⁻)	200mg/ℓ이하	74	14	15	75	72	14	45	52	16
	57.알루미늄(Al)	0.2mg/ℓ이하	0.02	불검출	0.02	0.0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4
판		정	정수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 : 학야정수장은 2012년 2월 중에 실시한 수질검사결과임

노후지역 수도꼭지

검 사 항 목	정수장 공급지역 기 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용흥동	송동리	환여동	해도동	택전리	문덕1리	구룡포리	마산리
1.일반세균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분변성대장균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암모니아성질소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유리잔류염소	4.0mg/ℓ이하	0.39	0.36	0.34	0.35	0.40	0.32	0.34	0.35
6.동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아연	3mg/ℓ이하	0.007	불검출	불검출	0.007	0.012	0.002	불검출	0.086
8.염소이온	250mg/ℓ이하	49	12	11	49	40	11	34	16
9.철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망간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판		정	수도꼭지 수도물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 수도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국번없이 121 또는 270-5454, 학야정수장 230-4792

포항시 민원센터

270-8282

▶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ipohang.org/)

◆ 시민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한 수도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